전 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2024. 04.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전 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2024.5.8. 개정

제1조 (법적근거)

본 규정은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근거로 한다.

제2조 (목적)

제1조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편입학 및 재입학'(이하 '전·편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전·편입학, 재입학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진학진로 상담부장, 학생인성 인권부장, 해당 학년부장, 학적계(간사)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학년 담임 및 해당 학급 담임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제청한다.

- ①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 ② 재입학에 관한 사항
-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 ④ 기타

제5조 (기본 방침)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의 비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 계획에 준하되, 학교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규정을 학교 누리집에 탑재해야 한다.

제6조 (전입학 등 운영 준수 사항)

- 1.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 가.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해당학교 누리집에 탑재한다.

- 1 -

- 나.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에는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2. 전 · 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 가.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 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 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
- 3. 전 · 편입학 허가
 - 가.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 나 아래의 정원 입 학생 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입로 전입학을 허용하다.

대 상 자	정원 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유급생	대상자전원	제51조 제1호	
재·편입학 대상자	대상자전원	제51조 제3호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대상자전원	제51조 제5호	
야간부 고교 폐교자	대상자전원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대상자전원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자전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특례귀국자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일반귀국자	3%	제51조 제5호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3%	제51조 제4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 제3항 제3호, 제82조의 2
타 시·도 전입자	3%	제51조 제5호	
군인자녀	3%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	
=1 = 11=1			·

※ 참고사항

- 1. 항목별 총합이 정원 외 5%를 넘더라도 각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는 전 편입학을 허용
- 2. 일반귀국자 정원 외 3%는 특례귀국자 정원 외 2%를 포함
- 3.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 외로 허용
- 4.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 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 4. 고등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포함) 및 산업체(혁신도시 내 이전 산업체 포함) 직원, 혁신도시 내의 건설 관련 업체(시행자 및 시공사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내 '양현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단, 해당자가 '양현고등학교'를 제외한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1' 항과는 별도로 정원 외 5%까지 허용할 수 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특별법 제 28조)
- 5. '1항'과 '2항'의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O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중학교: 해당 경우들에 대해 구비서류를 준용하되 반드시 지역교육지원청 규정으로 정함
- 학교장전형학교: 본 규정을 준용하되 학칙으로 정함
- Q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함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합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O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O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O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Q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 각급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을 안내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요망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O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함. 단,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O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부·모·자 등 전 가족 등재
 -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 가족이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 친족 및 친척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 사실 판단 기준

- 1.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는 아버지이나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부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 라.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의 거주지
- 2. 가거주(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 하는 경우(단. 1의 '다' 항 해당자 제외)
-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 3. '거주지'라 함은『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민법』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판단

학년말 정원 외 학적관리

- O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2865(2007.4.9.) "학년말 정원외학적관리 관련 질의회신 변경 통보"
 - 학년말 해당 학년 수료(졸업)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 정도 및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 2/3이상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 장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수료(졸업) 대상학생이 수료(졸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학하는지 여부는 별론의 사항임(즉, 결석일수를 출결상황에 반영하고 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학년말에 미인정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학적은 최초 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무단결석이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시기 바람

제7조 (전입학 등 절차)

1. 고등학교 재학생 - 정원 내 대상자

- 가. 재적교와 상담 후 전학 구비서류를 신청한다.
- 나. 재적교의 구비서류 발급은 전학의 동의로 간주한다.
- 다. 절차
- 재적교에 상담 후 구비서류 준비 → 구비서류 지참 후 전입학 신청(전입 희망학교) (재적학교,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 증명서 1부 지참) → 전입학 상담 → 전입학 심의위원회 → 전입희망교에서 전산자료 송부 요청 → 재적학교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 및 출력물건강기록부 이술)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2. 자퇴 및 퇴학생의 재입학 및 편입학 - 정원 외 대상자

- 가. 기본 방침
- 1) 중퇴자는 원칙적으로 원적교(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하도록 한다.
- 2) 재·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허용할수 있다.
- 3) 자퇴·퇴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다.
- 4)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편입학을 신청할 수 없다.
- 5)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6) 야간부 고등학교 휴학자, 자퇴자, 중도탈락자 중 야간부 고등학교 폐교로 재입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계열 주간부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전·편입학할 수 있다.

휴학 및 복학

- 휴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것을 말함
- 재학생은 아니나 학생의 신분은 유지하므로 정원 내로 관리
- 휴학을 할 때는 사유에 따른 휴학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휴학의 사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함
- 복학: 휴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복학
-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휴학에 대한 사유 소멸을 입증하면 휴학기간 만료 전에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학이 가능하다.

나. 재입학

- 1) 대상자: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 2) 절차: 희망자가 원적교에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재입학을 신청하면 원적교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 원적교 학교장은 재입학을 하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수시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퇴 및 퇴학 당시의 학년도에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편입학

- 1) 대상자: 도내 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 2) 절치
- 가)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 (1) 귀국학생 등: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 (2)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학생: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른다.
- 나)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으로 다시 입학
- (1) 자퇴 및 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가능하다.
- (2)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적교에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원적교 학교장의 추천과 편입학할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 (3) 원적교 학교장은 담임교사를 통해 추천서를 작성하여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편입학을 원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편입학을 공문으로 요청한다.
- (4)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편입학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3.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 - 정원 외 대상자

- 가. 대상자: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 1) 특례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4호 해당자)
-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 학하여 졸업한 자

-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 고등학교 특례편입학의 경우 중학교 전·편입 및 졸업 조건 불필요
- 2) 일반귀국자: 특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 가) 일반귀국자의 편입학은 원적교로의 편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절차: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및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한다.
-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한다.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 정원 외 대상자

- 가 대상자
-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 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 2)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 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
- 나 절차
- 1)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전입학 요청서를 작성한다.
- 2) 학교장이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공문으로 요청한다.
- 3)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4)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다. 단,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평준화지역 동일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와 가정(성)폭력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한다.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해당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나. 강제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다. 교육장은 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인로 배정한다
- 라. 교육장이 고등학생을 관할구역 외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지 원청의 배정위원회를 통해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 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 바.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 사.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입학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전입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아.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 를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유의사항

-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한다.
-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 정 가능하다.
-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 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하다.

6.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합 학교의 배정을 유청한 자

나. 절차

-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
-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체 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 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강에게 배정을 요청한다
- 3)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다. 유의사항

-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한다.
-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하다.
 -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하다.
- 3)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이 요청하다.
-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 5)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 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7.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ㆍ편입학 조치

- 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 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 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편입 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 정되면 전·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
-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편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 라. 전·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 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 마. 가해자에게 전·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합 경찰서에 신고한다
- 바.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 사.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비밀로 처리한 전·편입학은 그 결과를 해당 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8.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조치

-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한다)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

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한다.

2) 요청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열 구분 없이 정원 외로 배정한다.
-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 및 계열 구분에 대한 사항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다.
-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4) 전·편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 6) 고등학교의 배정은 처리 후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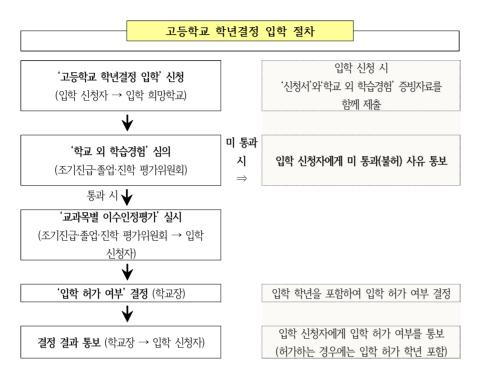
- 1)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1부 <서식 30>
- 2)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21>
- 3)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한 개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당사실 확인서"
 -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9. 소년원 재소자: 해당학교로 신청

- 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할 수 있다
- 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10.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해당 학년의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한다. 다만, 학년결정 입학신청일 당시 존재하던 결원이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허용 이전에 전·편입학 등으로 충원된 경우 정원 외 2%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 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특별학급) 등]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2학기 (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 학원 등 사교육 관련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경험은 제외한다.
 - ※ 1학년 3학기 또는 4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 기 또는 4학기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또는 3학기(4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과정까지만 이수한 경우는 1학기 과정만을 이 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학교외 학습 경험'의 1학기 과정은 매년 3월초에서 8월말까지 또는 9월초에서 다음 학년 2월말까지의 학습 경험으로 한다.
 - 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 1) 입학 신청자가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와 '학교외 학습경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한다. (학년결정 입학신청서는 해당 학교 제공)
 - 2) '학교외 학습경험'증빙 자료는 재학(제적·자퇴)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 3)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
 - 4)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 신청자에게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실시한다.
 - 5)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입학신청자에게(허가하는 경우허가 학년을 포함하여) 통보하고, 미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 6)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NEIS 학적처리 포함)



- 다. '학교 외 학습경험'심의 기준
 - 1)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기 평균 11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학기평균 11주 미만 또는 주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합산하여 심의 가능)

심의 기준 근거

- O 학기평균 11주
- 171일(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2/3(정규학교 학년수료 기준)=114일
- 171일=주 5일 수업 기준수업일 190일-19일(190일의 10분의 1)
- 114일÷5일(주당 수업일)=22.8주(연간, 학기당 11.4주)
- O 주평균 20시수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20시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수업일수)와 관련된 수업일수 기준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도 190일 이상
-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 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와 관련된 수료 기준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2) 해당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과락 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여 학교 누리 집 또는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그 외 입학신청 이후 정원 변 동 사항 등 학생·학부모가 궁금해 하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입학 신청 자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도 학교 누리집에 게재한다.
- 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은 해당 학교의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 가) 일반고 지필평가 예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반드시 지필평가의 방법이 아니어도 관계없 으나,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이를 기록한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야 함)를 실시한다. 단,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 함하거나 전문교과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회(또는 과학)교과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
 - 나) 학교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과목 변경 및 과목 수 가감이 가능(특성화고등 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 포함 또는 전문교과 과목만으로 대체 등 포함) 하다.
- 2)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 학교 정기 고사 수준으로 출제한다.(예: 고2 입학 신청자에 대해 고 1학년 2학기 기말고 사 범위에서 출제)
-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기준, 합격·불합격 기준 등은 해당학교의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여 학교 누리집에 사전 안내하

- 고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한다.
- 4) 문제지, 답안지 등 심의 및 평가(근거)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 이상까지 학교에서 보관한다.
- 마.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 내용
- 1) 고등학교별 학년결정 입학 가능 학생 수를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교육청 또는 학교별 누리집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2) 해당 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자 수가 입학 가능 학생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수의 입학신청자 모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결원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3) 기준일 이후 전입학 등 사유 발생 시 공시된 정원 변경 가능성도 함께 안내한다.

11. 입학 전 전입학(비평준화고) - 정원 외 대상자

- 가. 대상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북 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타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 ※ 도내 중학교를 졸업(예정)한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또는 도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는 입학 전 전입학이 불가능함

나 절차

- 1) 접수 시기: 학교장이 2월 중 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 2) 처리절차
 - 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 후 등록을 마침
 -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지 이전 완료
 - 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지 소재 입학 희망교를 방문하여 상담(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학 전 전입학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학 희망교의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음단계로 진행 할 것
 - 입학 전 전입학 허용 및 입학자격, 입학 시기 등은 입학 희망교의 해당 학교장이 정함
 - 라)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누리집에서 전입자 입학원서 출력
 - 마) 타 시·도 입학 예정 고등학교의 타 시·도 입학식 전 전출 상담 및 입학원 서의 확인 서류 작성
 - 타 시·도의 입학 예정 고등학교에서 직인으로 입학 예정 사실을 증명

- 타 시·도의 입학 예정 고등학교에서 전출 허용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방법 등을 확인 (등록금 반환 등 제반 사항은 학생 측에서 해결해야 함)
- 바) 타 시·도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전출을 허가 받은 후 출신 중학교의 직인으로 배정사실을 증명
- 사) 전입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비평준화지역 입학희망 고등학교에 제출
- 아) 해당 학교에서는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처리 후 등록금 고지서 발근
- 자) 등록금 납부 확인 후 학생의 출신중학교에 전출 동의 및 나이스 자료 요청 공무 방속
- 차) 출신중학교에서 자료를 송부하여 입학 전 전입학 처리 완료

제8조 (전 · 편입학 시기)

- 1. 동일계열로의 전입학: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2.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
-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 나.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 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가해야 하며,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체육 특기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간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 가능하다.
- 다. 타 시·도 전입생 및 체육특기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할 수 있다.
- 3. 재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수시로 허용한다.
- 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해당 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 학교장은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 허용 여부를 통보한다.
- 5. 입학전 전입학: 학교장이 2월 중 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하다.

제9조 (구비서류)

- 1. 일반학생의 전입학 제출서류
- 가. 전(편)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마.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1부
- 2. 자퇴 및 퇴학생 제출서류
- 가. 재입학
- 재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편입학
- 편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포함)
-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제출서류
 - 가 공통 제출서류
 -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부모의 전입학 요청 사유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 전입 희망교의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 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처분 서류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부모 사유서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 다. 심각한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학생 제출서류
 - 1) 지체부자유자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지체부자유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 종합병원 진단서 1부(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을 기재)
-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출서류
 - 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
- 나.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학교폭력 경과내용이 있는 처분 조치 서류 1부
-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마 당임교사 또는 상당교사의 학생 상당일지 사본 1부
- 5.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제출서류
 -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요청서 1부
 -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 다. 1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공문이나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1부
 - 라. 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 마 학교생확기록부 사본 1부
 - 바.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사.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증(이수자에 한함)
- ※ 참고자료(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 2.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 6. 수몰지구대상자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 7.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8. 귀국학생 등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참조
- 9.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 라.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1부
- 마. 고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 10.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제출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고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 마. 학교에서의 일반학생 전환 증빙서류 1부(일반학생 전환 협의록, 내부결재 등)
- 11.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 가. 전(편)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 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 라. 학력 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 12.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자 제출서류
- 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1부
-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 다.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서류 1부(고등학교 편입학용)
- 13. 입학 전 전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 가.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 1 부
- 나.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입학 신청서 제출 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제출
-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준용하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2조(시행일)

- 1. 이 규정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세부 규정 변경 사항(2024.4.30.)

구분	변경 전(2023학년도)	변경 후(2024학년도)
제 6조 3 참고 사항	6.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대상자 모두를 정원 외로 허용하되 중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육장이 자체 업무 시행 계획을 통하여 정원 외 허용범위 변경 가능	삭제
제 6조 4, 5	추가	4. 고등학교 전 · 편입학의 경우 타 시 · 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포함) 및 산업체(혁신도시 내 이전 산업체 포함) 직원, 혁신도시 내의건설 관련 업체(시행자 및 시공사가 타 시 · 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내 '양현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단, 해당자가 '양현고등학교'를 제외한 평준화일반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1' 항과는 별도로 정원 외 5%까지 허용할 수 있다.(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5. '1항'과 '2항'의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민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3р	추가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중학교: 해당 경우들에 대해 구비서류를 준용하되 반드시 지역교육지원청 규정으로 정함 • 학교장전형학교: 본 규정을 준용하되 학칙으로 정함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작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활경찰서 신고 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제작동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인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 된 것) 1부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 된 것)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 된 것)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 된 것)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학생 기존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존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존관계 등 기사 학생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기제출한 서류말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관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관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4p	추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 각급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 하위신고자 벌칙사항을 안내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요망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p	추가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단.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4p	추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부모자 등 전 가족 등째 ■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 가족이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 친족 및 천석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5р	추가	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 부모가 이혼한 후 찬권자는 아버지이나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찬권자 중 일부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라. 거점의탁 보호이동 후견인의 거주지 2. 가거주(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일부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단. 1의 '다양 해당자 제외) 라. 천책 또는 전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1의 '다양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3. '거주지'라 함은 "민밥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민밥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일상생활의 근거지'력 말하며, '일상생활의 근거지'력부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판단

5р	추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수료(졸업) 대상학생이 수료(졸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학 하는지 여부는 별론의 사항임(즉, 결석일수를 출결상황에 반영하고 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학년말에 미인정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학적은 최초 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무단결석이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 외로				
제 7조 1	1. 고등학교 재학생 - 정원 내 대상자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 →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학 신청(전입 희망학교) → 전입학 상담 → 전입학 심의위원회 → 전입희망교에서 전산자료 송부요청 → 재적학교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가. 재적교와 상담 후 전학 구비서류를 신청한다. 나. 재적교의 구비서류 발급은 전학의 동의로 간주한다.				
제 7조 2	추가	 가. 기본 방침 1) 중퇴자는 원칙적으로 원적교(학업중단 이전의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하도록 한다. 2) 재 ·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3) 자퇴 · 퇴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 · 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다. 4)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편입학을 신청할 수 없다. 5)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6) 야간부 고등학교 휴학자, 자퇴자, 중도탈락자 중 야간부 고등학교 폐교로 재입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계열 주간부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전·편입학 할 수 있다. 휴학 및 복학 ② 휴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질병등의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것을 말함 • 재학생은 아니나 학생의 신분은 유지하므로 정원 내로 관리 • 휴학을 할 때는 사유에 따른 휴학의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휴학의 사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함 ② 복학: 휴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복학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복학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복학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복학
제 7조 4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의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입학의 경우 가정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에서 발급한 "가정(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이외의 재적학교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교장 전입학 요청서 및 교육지원청의 배정확인서 등의 추가 서 류를 요구할 수 없음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재적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전입학할 학교에 직접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별도의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전학 으로 처리(허용)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 * 전 ·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 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	전에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학이 가능하다.

	학생의 전·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함. ※ 가해자에게 전·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제 7조 7	추가	7.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 · 편입학 조치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 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 · 편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 · 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의 3)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상당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 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 · 편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다.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 · 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 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라. 전 · 편입학을 대원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라. 전 · 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전 · 편입학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전 · 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마.가해자에게 전 · 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바. 피해학생의 전 · 편입학 차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사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비밀로 처리한 전 · 편입학은 그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형은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형은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형에 보고하고, 교육지원형은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형에 보고하고, 교육지원형은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형에 보고하고, 교육지원형은 1주일 이내에 전북된 보다 전략적으로 교육적으로 교육적 교육적으로 교육적으
제 7조 8	추가	8.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조치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 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 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 원서 등 참부셔름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한다. 2) 요청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열 구분없이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 및 계열 구분에 대한 사항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다.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강독하여야 한다. 4) 전・편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참부하여 관리한다. 6) 고등학교의 배정은 처리 후 1주일 이내에 전복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1)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1부 <서식 30>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서식 2≥ 3)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경우 포함) 확인서류는 한 개만 제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제 9조 가	가. 전입학 신청서 1부	가. 전(편)입학 신청서 1부
제 9조 마	추가	마.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 9조 3의 나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처분 서류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부모 사유서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제 9조 5	추가	5.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제출서류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요청서 1부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1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공문이나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1부 라. 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마.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바.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사.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증(이수자에 한함) ※ 참고자료(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제 9조 11	추가	11.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가. 전(편)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라. 학력 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제11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전라북 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준용하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준용하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4학년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4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하며, 전·편입학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서식 30	확인 발인	확인 날인		

<서식 1>

정원 외 관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정원 외 관리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에 입학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 본교 학년 정원 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용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도	구 시(군)	Ю	리 (면)	번지	
학교전화	(지역번호 :)	-			

20 년 월 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2>

거주지 이전 확인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성 명: (학년 반)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교 명:

□ 신거주지 주소 :

□ 휴대폰 번호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만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3>

입주확인서

입주확인서

본인 자녀의 전학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입주 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주계약서(사본)를 대신 제출하며 전학 후 3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모두 이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 사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부모: (서명)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4>

전 · 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전 · 편입학 신청서

	: () 반		
2. 학생성명 :	: () 성별	()			
3. 주소 및 연	<u></u> !락처 :			전화 : ()
위안 같이 귀 [:]	교에 전ㆍ편입:	학을 신청하∏	# 전·편입:	학 전ㆍ후	학교별	
	프해 또 돈입 I에 따른 불이!			. — .	. — —	
				의 작건합니	ILT.	
	2	0 년	월 일			
신청인과 학생	생과의 관계:	()	신청인:		(서명 또는	= 인)
제출서류: 1.	전입학 신청서	1부				
2.	전입학용 재희	남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원적교 학교상	J활기록부 15	=			
5	개인정보 수집	! · 활용 동이	서 1부			
	711232 12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절취선)

전 · 편입학 신청확인서

1.	학생소속: ()학교	()학년	() 반		
2.	학생성명: () 성	별 ()				
3.	전·편입학 순위: ()순위						
4.	학교 전화번호: 교무실	(), 형	뱅정실	()
	위와 같이 본교에	전	• 편입	학을	신청	하였음	음음	확인합니	다.
		20	년		월	일			
		T .	0. TI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직인)

)귀하

<서식 5>

거주지 약도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건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 승차버스 번호와 버스정류장 기재
- 주택 소유자 또는 문패 성명 기재

상기 거주지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 전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 작성

<서식 6>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요청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1.

2.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학교장 직인 (사인)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8>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고등학교 경우- 비평준화 고등학교만 해당)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입학 동의 내용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

상기 학생 ()의 ()시·군 ()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하며, 추후에 본 전입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직인 (사인)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9>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 · 편입학 결과

순	성명	전편입학 일자	원적교	전편입학교	사유	비고

※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0>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학업중단 학생이 원적교로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직인 (사인)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1>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사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학년반 성명 기재)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 임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사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2>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반	호		
	35			성 별	남	· 04	접 수	일	20	
대상자	학교	고장(교육장)0	l 지정하는	=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성당	명 (한글)				TJ 등I F	4 -			
보호자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전화번호				
	현주:	소				•				
			학교폭	력대책 지	치위원:	회 전학 3	오치 샤오	7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 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3>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4>

재입학원서

재 입 학 원 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	생년월일			접수변	호	
			성	盟	남	· 여	접 수	일	20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선외	그오		
자퇴·퇴학 년 월 일									
자퇴 사	· 퇴항 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퇴학하였으나 다시 한 번 입학하여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퇴학하였으나 다시 한 번 입학하여 제 ()학년 ()학기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5>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성명	(한글)		생년월	월일					접수번	호			
	70			성	별	٢	· ·	여		접 수	일	20) .	
지원자	주소													
	최종 학력		! (교 (정고 <i>.</i>)학년 합격	! ()	대학·/	제적	· 수호	료·졸	업)
		구 분	기관(시	설)명			재	학	기	간			재 흐	: 학 년
	학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
	교	고등학교				(년		개월간))		(재호	ᅷ·수료)
		학력인정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
	외	7720				(년		개월간))		(재호	ᅷ·수료)
	꾀	기 관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
						(년		개월간)			(재호	ţ·수료)
	학					년	월	일	~		_	일	()학년
	습	국 내				(년		개월간)			(재호	∜·수료)
	경	비 정 규				년 ,	월	일	~		_	일	()학년
	_					(년		개월간)			(재흐	박·수료)
	험	교육시설				년 ,	월	일	~		_	일	()학년
						(년		개월간))		(새흐	₹·수료)
보호자-	성 명	(한글)						번호						
	지원자	나와의 관계					신와	닌오						
			•			•				•				

위와 같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하오니 제 ()학년에 학년결정 입학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6>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의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	생()의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				
	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So cear eve te tellar.				
	20 년 월 일				
()교육장(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17>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녀인 ()의 ()시·군 ()학	
동의하며, 추 임을 확인합L	≝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저 니다.	기하지 않을 것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8>

하새人소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하고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하녀

버

바

	.—		_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	의 내용 (구체적으	로 작성)
	()의 (:후 본 전입학에 관련 합니다.		
	20 {	<u> </u>	
		()학교장 (직인)
()교육장(학	·교장) 귀하	

<서식 19>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진술서)

사 유 서(진 술 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성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보호기	다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종류	(해당하는 전·편입학의	의 종류를	명시) 예)거주지이전 전입학
미제출서류명				
미제출사유	(구체적으로 자필로 작	성)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구비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해당 사유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전 · 편입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락된 서류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귀교(기관)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조치 사항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교육장(학교장) 귀하

※ 본 사유서(진술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서식 20>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 친권자의 입학전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입학전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입학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	생()의 입학전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서식 21>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비평준화지역 입학전 전입학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

지워자	성 명	접 수 9 명 (인) 생년월일	일											
NEXI	0 0	접수번	호											
	성 명	(인) 학생과의 관 계 생년월일												
보호자	현주 ,		화 번호											
	소	자택	H.P											
	위	l 지원자는 본교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	I고 능록을 마져,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귀 고등학교 지													
	원에 동의함													
타		20 년 월 일												
시·도		() 고등학교장 (직인)											
고등														
학교	학교	고 전화번호: 학교 FAX번호 :												
입학 예정	위 :	지원자는 20 년 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	서 ()학년도											
사실	신입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임을 증명함												
증명		20 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학교	<u> </u> 우편번호: () 주소:												
	학교	2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상:		∥ 입학전 전입을											
	희망	당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학		20 년 월 일												
희망원		지원자 (인)	(인)											
700		보호자 (인)												
	()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학교장전형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입학 전 전입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시까지 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식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3>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양식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1

1. 재취학 학생 인적사항

			연락처	
학생명	성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HP)	주소

2. 재취학 신청 사유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000년 0월 0일 학부모의 신청 (질병으로 인함)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으로 재취학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 ○ ○ ○ 학 교 장 귀하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학생 성명 : ○ ○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에서 20 년 월 일자로 귀국한 바, 거주지 해당학교(〇〇)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재취학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취학 희망 학년: ()학년

20 년 월 일

보호자명: ○ ○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24>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사유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전입학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학년반 성명 기재)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사유로 학교교 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55 -

<서식 25>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	호		
	98			성 별	남	· Ф	접 수	일	20 .	
대상자	학교	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성당	명 (한글)				거리	4 =			
보호자	지원기	다(학생)와의	관계			전화번호				
	현주:	소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심리치료(특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 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6>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27>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재적교					학고	2		학	년	제	학년		반 번
지	성 명								생년	1월일				
원	재적 기간		년 년	월 월	일 일	입 제	학	학년 7	레 학	기까지	재학	성	별	남·여
자	주 소													
	성 명							TI	원 자 인	·의 관계	11			
보											"			
호	연락처	집)						류니	내폰)					
자	주 소													
희망	1순위		학교											
배정	2순위								학교					
학교	3순위								학교					
확 인 및 서 명 란	학교 배경 불이익은				것을 년 기		월 :		육과정 일	차이기 인 인	· 있을	경우 ()I (HI	따른
			ć	상기 章	학생으	배정	을	신청 5	또는 동	의합니	다.			
				20		[원자: 연호자:		i	일	인 인				
							 추 i	천 서						
스 다.	당기 학생은	≘ ਜੁ	육환경	병 변호	하가	필요ㅎ	녀	추천히	나니 타	학교로	르 배정	해 주시	ハ기	바랍니
					2	20 է	크	월	일					
									학교장	(직인	1)			
<u>ح</u>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8>

전입학 동의서(비평준화고 :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시 활용)

전입학 동의서

지원자		(한글)	생년	크월일				
	성명			성	별		남·여	
보호자	성 5	명 (한글)			전화	번호		
	지원	자와의 관계						
	주소	:						

학교 배정으로 인한 전입학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29>

귀국자 (편)입학 학부모 확인서

학 부 모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외국학교명 (시트명: / 열 번호:)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 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확인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0>

│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101	담당자	교감
확인 날인		
120		

국내출신학교명	학교	성명		성별	남·여
전 화 번 호	(자택)	(보호제	다의 휴대폰)		(학교)

		특례대상재특례	입학, 특례편입	학(특례재취학))		일 반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초중 학교과정을 모 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 와 함께 2년 이 상 재학한 학생	정부조청가국 과 학기술자 및 교 수요원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학생	편입학 (재취학)	비 고
TUNH							
고등학교(중학교) 특례입 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0	0	0	0	0	0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성적)증명서	0	0	0		0	0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0				(()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제적(정원외)증명서		0	0			0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학생)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0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0	0	0	0	(()	0	
위 과학을자, 교수요원의 정부 청정 또는 추어서 시본			0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 또 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〇) (부,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부,모,학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0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0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0			
정당한 국외출국 시 국외 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	
예방접종 확인서	(O)	(O)	(O)	(O)	(O)	(O)	
학부모 확인서	0		0	0		0	

※ (○) : 해당자에 한함, ○ : 필수 서류

※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작성 참고 사항

- 1. 해당자별 해당란에 □에 체크표시(√)
- 2. 중학교에 재취학하여 고등학교에 특례입학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중학교에서 재취학 당시의 제출서류(학교보관 분) 일체를 복사 하여 원본대조필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함
- 3. 외국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서상의 성명, 학교명, 입·퇴학년·월·일(재학기간), 재학학년(현지 학년으로 표시), 성적(해당 학년) 등에는 적색 볼펜 혹은 형광펜으로 표시
- 4.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에 각목 해당자별로 구비된 서류에 "○"를 적색으로 색칠하여 "●"표하고, 소속 학교 교감과 교사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확인 날인란에 날인(또는 서명)
- 5.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철하되,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를 첫 장으로 한다. 구비서류 중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6.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자의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서식 31>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성	명													
		생년월	일						성빌	<u> </u>		남 .	여	사진 (3cm × 4cm)		
		국 연 락	내 처	(주소)	주소) (전화번호)											
		입학구	·분			신	민입학					편입	입학 (학년)		
	기 간				학	력	력 사 항 국내학교 정에 해당는 과정				'교 과 해당하 정	학교소재지 국가명 도시명		정규학교 여부		
지 원		. ~			학	Z \$	학년졸업(예정	s).수s	로.재호	학중						
자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학교	J 3	학년졸업(예정	5).수호	로.재호	학중						
		. ~			학	Z \$	학년졸업(예정	5).수호	로.재호	학중						
	관 계	성명	거주국		네주시; (기 간		여권발급사 (유효기전		티	재 :록	외국민 시기(기	간)	채류 거주국	기간 제3국	직업	비 고
	본인	해당 없음		(년	- 개월	일)	()	(년	- 개월	일)			해당 없음	
보호자	바			(년	- 개월	일)	()	(년	- 개월	일)		해당 없음		
자	모			(년	- 개월	일)	()	(년	- 개월	일)		해당 없음		

고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하고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등학교(중학교) 입학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입학신청서 작성 요령

- 1.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외국학교 전과정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의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 까지 정확히 기재
- 2. 체류기간은 부모는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시 해당 수학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 3. 신입학·편입학 해당란에 ○으로 표기 (편입학은 학년표시)
- 4. 국내 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기입
- 5. 첨부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후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날인

<서식 32>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성	명:	(ठ्	한자:		영문:)				
생년월	일일:	년	월	일생	성별:					
위 학/	생은 재()동	포 부(),	모()의 자녀로서				
모국 충	아래 주소에서									
기주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77. –		, ,							
	신 청 인	. 주 소:								
신 청 인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녆	월	일						
j	확인자 ()동 ()통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 ()통 ()반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귀하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지 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사진 (3cm × 4cm)					
	주	소															
	배정희망학년					편입	J 학	또는	: 재	취학	(7	학년)			
	국내학력			년	월	일까기	지 ()학.	교 ()학년	1 ()학	기 (자	학·수	료·졸업)
	국외수학기간			학 력 사 형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가명 도시명		명	정규학. 여부	교		
	~			학교	ģ	학년졸업(예정).	수료.자	학중			'	, 0				
	~			학교		다. 다른졸업(_										_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학중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학중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				학중										
	^			학교	ė	부년졸업(,		학중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겨			악의 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보	국외근무내용			무ᄎ	_												
호 자	(정당한 해외출국		근되	구기긴	ŀ												
ļ .	(정당한 해외출국 에 한하여 작성)		국내	근무	처												
	출 입 국 년 월 일	ᇽᆝᆩᇰ	ы ті	출크	국	년	월	일		보 호	т.	출국		년	월	일	
	출 입 년 월	할 지원	크 ^[입국	1	년	월	일	-	보 오	^r	입국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 측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	20	녆	1	월	ļ	일							
지원자 보호자									명 <u>-</u> 명 <u>-</u>		,						

보호자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